

W T O 평가협정 해설

【제1조】

1.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,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다.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, 구매자에 의한 상품의 추후 재판매,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.

협정해설

- 협정 제1조에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의 3번째 형태로 구매자에 의한 상품의 추후 재판매,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.
- WTO관세평가협정과 우리나라 관세법은 이를 사후귀속이익이라 규정하고 있다.